

대전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19가합104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김광수, 배철욱

피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조합

10. L조합

피고 9,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양홍규, 윤영훈, 진시연

11. M

피고 1, 3, 4, 5, 6, 7, 8,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변론 종결 2021. 6. 16.(피고 2, 9, 10에 대하여)

2021. 7. 21.(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21. 10. 6.

주 문

1. 가. 피고 C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9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0,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61,2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6,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69,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7,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G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8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각 9,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G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8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각 9,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H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76,6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H은 원고들에게 각 8,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가. 피고 H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37,2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H은 원고들에게 각 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가. 피고 I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50,4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각 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9. 가. 피고 I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55,8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각 6,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0. 가. 피고 H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50,7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H은 원고들에게 각 5,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 가. 피고 I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48,9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각 5,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2. 가. 피고 I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40,1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각 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3. 가. 피고 I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23,0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각 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4. 가. 피고 I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29,9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각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5. 가. 피고 I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43,4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각 4,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6. 가. 피고 J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66,6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J은 원고들에게 각 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7. 가. 피고 J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20,1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J은 원고들에게 각 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8. 가. 피고 J과 주식회사 N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8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J은 원고들에게 각 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9. 원고들의 피고 C, D, G, H, I, J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E, F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피고 K조합, L조합, M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0.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D, G, H, I, J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F, K조합, L조합, M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2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1) 원고들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 2) 피고 C, D, E, F, G, H, I, J(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N로부터 대전 유성구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피고 C 등이 N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호실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P호)
2	D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Q, R호)
3	E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S호)
4	F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T호)
5	G	별지 1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U, V호)
6	H	별지 1 목록 제8, 9, 12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W, X, Y호)
7	I	별지 1 목록 제10, 11, 13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Z, AA, AB, AC, AD, AE, AF호)
8	J	별지 1 목록 제18 내지 20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AG, AH, AI호)

3) 피고 K조합(이하 '피고 K조합'이라 한다), L조합(이하 '피고 L조합'이라 하고, 피고 K조합과 합하여 '피고 조합들'이라 한다), M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C 등이 N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호실의 근저당권자이다.

나. N의 피고 C 등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

1) N의 피고 C 등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N은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호실'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아래 표 '접수일자 및 번호'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P호	피고 C	2018. 7. 17.	2018. 7. 19. 제58167호
2	Q호	피고 D	2018. 6. 25.	2018. 7. 6. 제54896호
3	R호	피고 D	2018. 6. 25.	2018. 7. 6. 제54898호
4	S호	피고 E	2018. 6. 27.	2018. 7. 6. 제54900호
5	T호	피고 F	2018. 6. 27.	2018. 7. 6. 제54902호
6	U호	피고 G	2018. 6. 5.	2018. 7. 6. 제54905호
7	V호	피고 G	2018. 6. 5.	2018. 7. 6. 제54907호
8	W호	피고 H	2018. 7. 2.	2018. 7. 6. 제54909호
9	X호	피고 H	2018. 7. 2.	2018. 7. 6. 제54913호
10	Z호	피고 I	2018. 7. 2.	2018. 7. 6. 제54915호
11	AA호	피고 I	2018. 7. 2.	2018. 7. 6. 제54917호
12	Y호	피고 H	2018. 7. 2.	2018. 7. 6. 제54919호
13	AB호	피고 I	2018. 7. 2.	2018. 7. 6. 제54921호
14	AC호	피고 I	2018. 7. 2.	2018. 7. 6. 제54924호
15	AD호	피고 I	2018. 7. 2.	2018. 7. 6. 제54926호
16	AE호	피고 I	2018. 7. 2.	2018. 7. 6. 제54892호
17	AF호	피고 I	2018. 7. 2.	2018. 7. 6. 제54894호
18	AG호	피고 J	2018. 6. 5.	2018. 7. 6. 제54928호
19	AH호	피고 J	2018. 6. 5.	2018. 7. 6. 제54930호
20	AI호	피고 J	2018. 6. 5.	2018. 7. 6. 제54932호

2) 피고 조합들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조합들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자'란 기재 각 피고들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란 기재 각 돈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자'란 기재 각 피고 조합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P호	피고 C	K조합	2018. 7. 19. 제58168호	471,600,000
2	Q호	피고 D	K조합	2018. 7. 6. 제54897호	367,200,000
3	R호	피고 D	K조합	2018. 7. 6. 제54899호	352,800,000
4	S호	피고 E	K조합	2018. 7. 6. 제54901호	250,800,000
5	T호	피고 F	K조합	2018. 7. 6. 제54903호	273,600,000
6	U호	피고 G	K조합	2018. 7. 6. 제54906호	406,800,000
7	V호	피고 G	K조합	2018. 7. 6. 제54908호	380,400,000
8	W호	피고 H	L조합	2018. 7. 6. 제54910호	362,400,000
9	X호	피고 H	L조합	2018. 7. 6. 제54914호	236,400,000
10	Z호	피고 I	K조합	2018. 7. 6. 제54916호	213,600,000
11	AA호	피고 I	L조합	2018. 7. 6. 제54918호	267,600,000
12	Y호	피고 H	L조합	2018. 7. 6. 제54920호	321,600,000
13	AB호	피고 I	L조합	2018. 7. 6. 제54923호	228,000,000
14	AC호	피고 I	L조합	2018. 7. 6. 제54925호	225,600,000
15	AD호	피고 I	L조합	2018. 7. 6. 제54927호	230,400,000
16	AE호	피고 I	K조합	2018. 7. 6. 제54893호	301,200,000
17	AF호	피고 I	K조합	2018. 7. 6. 제54895호	242,400,000
18	AG호	피고 J	L조합	2018. 7. 6. 제54929호	303,600,000
19	AH호	피고 J	L조합	2018. 7. 6. 제54931호	130,800,000
20	AI호	피고 J	L조합	2018. 7. 6. 제54933호	402,000,000

3)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N은 2018. 8. 20.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대전지방법원 제67161호),
피고 M는 2018. 10. 31. N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지위를 이전받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대전지방법원 제86955호).

4)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N은 2018. 8. 20.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대전지방법원 제67162호),

피고 M는 2018. 10. 31. N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지위를 이전받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대전지방법원 제86956호).

다. 원고들의 N에 대한 투자금반환 소송

1) 원고들은 N을 상대로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5413), 위 지급명령 사건은 N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9. 7. 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N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933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2. 피고 M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가) 원고들이 N을 상대로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합109336 판결로 모두 인용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N에 대한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소송의 피보전채권(이하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을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을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원고 주식회사 B의 피보전채권을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일부 변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들은 '원고 A의 N에 대한 원채권은 200,000,000원이 아닌 180,000,000원이다(또는 20,000,000원은 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5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A이 N에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2017. 2. 3. N이 원고 A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의 N에 대한 투자금 약정서에 투자금이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반환 시점은 2018. 1. 18.로 정하고 있는 점, ② N이 원고 A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투자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N에 대한 원채권이 180,000,000원이라거나 이 2017. 2. 3. 원고 A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이 원고 A의 N에 대한 투자금 변제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원고 A이 AJ, AK, AL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모두 원고 A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3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주장하는 AJ 명의에서 원고 A으로 송금된 돈(순번 1 내지 8)은 원고 A이 이미 투자금 채권 200,000,000원에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50,000,000원에 해당하여(을가 46호증의1과 갑 제10호증의2는 그 내역이 동일하다, 을가 제46호증의1에 추가로 AJ 명의에서 원고 A에게 2,000,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투자금의 변제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새로운 변제로 볼 것은 아닌 점, ② AK, AL이 송금한 돈(순번 9 내지 13)이 원고 A의 N에 대한 투자금 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21. 3. 10.자 AM 명의 확인서(을가 제31호증의3) 기재에 의하면 AL이 원고 A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원고 A의 투자금 채권과 전혀 별개의 원인으로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표 기재 돈을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의 변제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8. 6. 6.	2,000,000	
2	2018. 7. 13.	5,000,000	
3	2018. 7. 22.	10,000,000	
4	2018. 7. 23.	5,000,000	을가 제46호증의1
5	2018. 7. 23.	10,000,000	AJ의 계좌
6	2018. 7. 24.	10,000,000	
7	2018. 7. 26.	5,000,000	
8	2018. 7. 26.	5,000,000	
9	2021. 3. 30.	1,000,000	
10	2021. 4. 30.	1,000,000	을가 제46호증의2
11	2021. 5. 30.	1,000,000	AK의 계좌

1	2018. 6. 6.	2,000,000	
12	2021. 6. 30.	1,000,000	
13	2021. 3. 10.	50,000,000	을가 제47호증, AL 관련
합계	106,000,000		

(3) 피고들은 '원고들이 2019. 3. 26. 대전지방법원 AN 사건을 통하여 각 27,105,467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변제받았고,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AO 경매사건을 통하여 각 8,832,185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배당금을 원고들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에 변제충당하면 별지 3 변제충당 표 기재와 같고, 2019. 11. 28. 기준 원금 134,606,861원, 이자 4,704,001원 총 139,310,862원이 남는다.

다) 결국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은 139,310,862원 및 그 중 134,606,861원에 대하여 N이 마지막으로 변제한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연 15%)이다.

2) N의 무자력 가) 적극재산(2018. 7. 6. 기준1))

(1) 아래 표에 기재된 N의 적극재산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AP 대 710.1m ²	2,040,649,875	갑 제3호증의2
2	AQ 대 577m ²	2,960,000,000	갑 제3호증의3
3	AR 대지 및 지상건물	6,547,000,000	2020. 10. 22.자 감정결과
합계	11,547,649,875		

(2) 피고들은 아래 표에 기재된 부분도 N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AJ은 N의 실질적 경영자인 AM의 장모로, AM는 AJ의 AS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N이 AM에게 송금한 돈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N의 AM에 대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주식회사 AT는 N의 자회사로 별개 법인이고, 주식회사 AT가 N에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통상 법인간의 금전 대여에 수반되는 사정(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N이 주식회사

AT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주식회사 AT의 재무재표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등)이 존재하지 않고, 주식회사 AT 명의 계좌가 앞서 살펴본 AJ 명의 계좌처럼 AM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N이 주식회사 AT에게 송금한 돈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N의 주식회사 AT에 대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AM, AU, 피고 C에 대한 송금에 관하여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만 제출하고 있을 뿐 대여계약서 등 N의 대여금 채권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2018. 12. 31.자 N의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이 2,277,539,65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단기대여금의 채권자가 AJ, 주식회사 AT, AM, AU, 피고 C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고, N이 단기대여금의 내역을 임의적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N이 AJ, 주식회사 AT, AM, AU, 피고 C에게 송금한 내역이 N의 적극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AJ에 대한 채권	1,487,400,000	을가 제24호증
2	주식회사 AT에 대한 채권	495,100,000	을가 제25호증
3	AM에 대한 채권	180,000,000	을가 제26호증
4	AU에 대한 채권	105,000,000	을가 제29호증
5	피고 C에 대한 채권	100,000,000	을가 제30호증
합계	2,367,500,000		

다) 소극재산(2018. 7. 6. 기준)

(1) 아래 표(처분문서나 등기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소극재산)에 기재된 N의 소극재산에 대하여는 순번 3번 AV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 A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	200,000,000
2	원고 B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	200,000,000
3	AV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	1,080,000,000
4	AV에 대한 대여금채무	570,000,000
5	AW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998,700,000
6	채권자 AX에 대한 채무	1,554,070,000
7	채권자 AY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28,205,479
8	채권자 AZ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이자포함	3,153,520,580

1	원고 A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	200,000,000
9	채권자 BA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500,000,000
10	채권자 BB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091,304,648
11	채권자 B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00,000,000
12	채권자 B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
소계	11,775,800,707	

(2) 위 '(1)항' 표 순번 3번 AV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무 1,080,000,000원이 N의 소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V과 N은 BD외 1건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약정 제6조의 자금집행순서에 피고 N의 투입비와 이익금은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대금과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차입금 이자 토지비 대출금 상환, 광고비 분양수수료 등 사업비, 건축공사비, 시행사 운영비 다음에 지급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투자약정 제7조에는 AV과 N 손실을 1/2씩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이 AV에 투자비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3) 아래 표(기타 소극재산)에 기재된 N의 소극재산에 대하여는 순번 13, 18, 19번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BE 및 피고 M에 대한 채무	2017. 11. 29.	50,000,000
2017. 11. 29.	50,000,000		
2017. 11. 30.	90,000,000		
2017. 11. 30.	90,000,000		
2	BF에 대한 채무	2017. 11. 29.	300,000,000
3	BG에 대한 채무	2017. 12. 7.	200,000,000
2017. 12. 10.			
4	주식회사 BH에 대한 채무	2018. 7. 6.	83,553,654
5	BI에 대한 채무	2018. 7. 6.	200,000,000
6	BI에 대한 채무	2018. 7. 7.	500,000,000
7	BJ에 대한 채무	2018. 7. 10.	10,000,000
2018. 7. 10.	20,000,000		

1	BE 및 피고 M에 대한 채무	2017. 11. 29.	50,000,000
2018. 7. 11.	25,000,000		
2018. 7. 12.	25,100,000		
8	BJ에 대한 채무	2018. 7. 20.	97,000,000
9	BJ에 대한 채무	2018. 7. 20.	103,000,000
10	BJ에 대한 채무	2018. 8. 6.	10,000,000
11	이자 채무	2018. 7. 9.	10,000,000
12	이자 채무	2018. 7. 17.	7,500,000
13	D에 대한 채무	2018. 7. 9.	30,000,000
14	BK에 대한 채무	2018. 7. 9.	50,000,000
2018. 7. 9.	50,000,000		
2018. 7. 16.	100,000,000		
15	BL에 대한 채무	2018. 7. 10.	60,000,000
16	BM(혹은 BG)에 대한 채무	2018. 7. 10.	10,000,000
17	BN, BO에 대한 채무	2018. 7. 10.	130,000,000
18	AJ(인테리어)	2018. 7. 6.	10,000,000
19	AJ(인테리어)	2018. 7. 20.	30,000,000
20	AY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018. 7. 20.	50,000,000
2018. 7. 20.	1,500,000		
2018. 7. 20.	13,500,000		
21	BP에 대한 채무	2018. 7. 20.	1,500,000
2018. 8. 31.	6,000,000		
22	BQ에 대한 채무	2018. 7. 20	28,670,000
23	BR(BS)에 대한 채무	2018. 7. 21.	10,000,000
24	BT에 대한 채무	2018. 7. 23	10,000,000
25	BU에 대한 채무	2018. 8. 2.	3,000,000
26	BV에 대한 채무	2018. 8. 8.	45,000,000
합계	2,508,823,654		

(4) 위 '(3)항' 표 순번 13번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D는 N로부터 2018. 7. 6.경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는 위 D의 N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 D이 사해행위의 악의 수익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18. 7. 6. 이후에 피고 D이 N에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피고 D이 N에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분양대금의 지급 등 다른 사정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5) 위 '(3)항' 표 순번 18, 19번 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이 부분 송금 내역은 주식회사 AT의 인테리어 비용을 N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J은 N의 실질적 경영자인 AM의 장모로 AM가 AJ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N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AJ 명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AJ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N의 채권 또는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6) 결국 N의 소극재산은 총 13,134,624,361원{= 위 '(1)항' 표 기재 채무 총 11,775,800,707원 - 위 '(1)항' 표 순번 3번 채무 1,080,000,000원 + 위 '(3)항' 표 기재 채무 총 2,508,823,654원 - 위 '(3)항' 표 순번 13번 채무 30,000,000원 - 위 '(3)항' 표 순번 18번 채무 10,000,000원 - 위 '(3)항' 표 순번 19번 채무 30,000,000원}이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7. 6. 기준 N의 적극재산 총액은 11,547,649,875원이고, 소극재산 총액은 13,134,624,361원이다. 따라서 2018. 7. 6. 당시 N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성립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N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 C, D, E, F, G, H, I, J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C, H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 N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 H, C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시킬만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악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피고 D에 대한 판단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은 2016. 11. 17. N에 현금으로 30,000,000원을, BW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00,000원을 AJ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총 260,000,000원을 N에 대여하였고,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개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였으며, N로부터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는 피고 D의 N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피고 D이 피고 K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N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바, 피고 D이 N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D은 N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D은 여전히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고,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3) 피고 E, F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4호증, 을가 제5 내지 9, 11, 12,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 F는 2017. 12. 27. 공인중개사 BX의 중개로 별지 1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을 N로부터 각 분양받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 27., 2018. 1. 9., 2019. 7. 6., 2018. 7. 31. 등에 N 명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점, ② 피고 E, F는 별지 1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받은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점, ③ 피고 E, F가

N의 채권자였다거나 N로부터 별지 1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사정이 없고, 통상적으로 건물을 분양받는 수분양자가 시공사 내지 분양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F는 별지 1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수분양자로 N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4) 피고 G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3,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2018. 7. 2. N로부터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517,138,000원에 분양받았고 분양대금 중 50,000,000원의 지급은 G의 N에 대한 채권으로 갈음하였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AM와 BJ, BY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한 점, ② G은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483,772,240원에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은 피고 K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17,000,000원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G은 N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도 N 명의 계좌로 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G은 여전히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고, 피고 G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5) 피고 I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4,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I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7개 점포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20% 할인받는 조건으로 분양받은 점, ② 피고 I은 분양대금 중 480,000,000원의 지급을 피고 I의 BI에 대한 채권으로 갈음하였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피고 조합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N에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실제 분양대금을 지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I은 N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서 정상적인 가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나아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I은 여전히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고, 피고 I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1	Z	2018. 7. 2.	278,624,950	222,899,960	을가 제19호증의1
2	AA	2018. 7. 2.	344,689,154	275,751,323	을가 제19호증의2
3	AB	2018. 7. 2.	294,067,040	235,253,632	을가 제19호증의3
4	AC	2018. 7. 2.	290,146,564	232,117,251	을가 제19호증의4

1	Z	2018. 7. 2.	278,624,950	222,899,960	을가 제19호증의1
5	AD	2018. 7. 2.	300,844,460	240,675,568	을가 제19호증의5
6	AE	2018. 7. 2.	387,689,278	310,151,422	을가 제19호증의6
7	AF	2018. 7. 2.	302,053,969	241,643,175	을가 제19호증의7
합계	2,198,115,415	1,758,492,331			

(6) 피고 J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J은 N 및 BZ(N의 대표이사)에게 2017. 2. 17.부터 2018. 5. 29.까지 4회에 걸쳐서 총 12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 J은 2018. 7. 3. N로부터 별지 1 목록 제18, 19, 20항 기재 부동산을 각 384,550,811원, 191,582,023원, 525,020,660원에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의 일부는 위 대여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분양대금 중 일부는 피고 J이 피고 L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한 점, ③ 피고 J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J은 N에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2) 별지 1 목록 제18, 19, 20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J은 N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J은 여전히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고, 피고 J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반복하기 어렵다.

(7)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E, F는 선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피고 C, D, G, H, I, J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5) 피고 조합들이 선의의 전득자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차 제1 내지 53호증, 을카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들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

(1) 피고 조합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분양계약서를 검토한 후 피고 조합들의 업무규정 및 여신 업무방법에 의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대출을 진행하였고, 담보물현장답사,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시가감정(해당 시가감정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2) 피고 L조합은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여 피고 H, I, J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후 위 피고들의 위탁에 따라 위 대출금을 법무사 BY의 업무용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 K조합은 피고 C, D, E, F, G, H, I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후 위 피고들의 위탁에 따라 위 대출금을 법무사 BY의 업무용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은 일단 피고 C 등의 명의로 입금된 점, 건물의 분양에 있어 분양대금을 대출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C 등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들이 허위 대출을 하였다거나 N의 사해행위를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N은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아니고, N의 변제자력 등이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들이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면서 N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N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분양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가) 관련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이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N이 약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 C, D, G, H, I, J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한다)는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다만, 약의의 수익자인 피고 C, D, G, H, I, J이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후 선의의 전득자인 피고 조합들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 C, D, G, H, I, J이 위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7. 21.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N에 대한 각 채권액을 계산하여 보면, 172,501,595원[= 원금 134,606,861원 + 2019. 11. 28.까지의 잔여 지연손해금 4,794,001원 + 2019. 11. 29.부터 2021. 7. 21.까지의 지연손해금 33,190,733원{= 134,606,861원 × 15% × (601일 / 365일)}]이 되고,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150,000,000원 보다 다액이다.

(2) 약의의 수익자인 피고 C, D, G, H, I, J을 기준으로 공동담보의 가액을 계산하면, N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액은 약의의 수익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C, D, G, H, I, J이 사해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의 가액은 별지 4 원고들 청구 표 '감정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의 범위는 별지 4 원고들 청구 표 '취소범위'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범위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내지 앞서 살펴본 N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보다 소액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4 원고들 청구 표 '취소범위'란 각 기재 돈의 범위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한다.

(4)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들이 명시적 일부청구로 별지 4 원고들 청구 표 '청구금액'란 각 기재 돈만큼의 가액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 D, G, H, I, J은 원고들에게 별지 4 원고들 청구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기재는 주문과 같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E, F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들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E, F, 피고 조합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C, D, G, H, I,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M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M는 N의 채권자로 N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N로부터 별지 1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 받았으므로 피고 M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별지 1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N이 근저당권자를 N, 채무자를 피고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고, 피고 M가 N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 지위를 이전받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M는 N의 채권자로서 M의 N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N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소송 중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N이 별지 1 목록 6, 7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이전등기 한 행위(이하 '피고 G에 대한 사해행위'라 한다)이므로, N이 피고 M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새로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익자인 피고 G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았거나, 피고 G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닌 피고 G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N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 M를 피고 G에 대한 사해행위의 전득자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M가 N의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M가 N이 별지 1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C, D, G, H, I, J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피고 C, D, G, H, I, J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E, F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피고 조합들, M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박서우

판사송현섭

별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이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들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자는 각기 다르나, 사해행위 시점은 대부분의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8. 7. 6.로 한다(사해행위 시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20. 11. 18.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 5면